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4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이종배・이종성・강대식

윤두현・김희국・조수진

김상훈 · 김형동 · 윤영석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또는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 기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복지사업, 공제사업, 교육지 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이들 조합법 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

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율 과세특례 각각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조합법인이 서민금융기 관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제87조 및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0년 12월 31</u> 일까지 경	<u>2025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u>-</u>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면) ①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	
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 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3. (생략)
-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
1.		
		<u>2025년 12월 31일</u> -
2.		
		<u>2025</u>
		<u> 31일</u>
3.	 (현행과	
2		
_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감면한다.

-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

1
1.
2025년 12월 31일
2
<u>2025</u>
<u>년 12월 31일</u> .
3. (현행과 같음)
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u>202</u>
5년 12월 31일